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0533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변경전 상호: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3. 16.
판 결 선 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지역자원시설세 13,211,560원 및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44,178,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7

[redacted]도지사는 2015. 10.경 [redacted]시 소재 고령토 및 규석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광산에서 채광한 고령토 및 규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9~12월 귀속 지역자원시설세 13,211,560원 및 2014년 1~12월 귀속 지역자원시설세 44,178,0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이고, 어떤 광구에 조광권이 설정된 경우 광업권자가 아닌 조광권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광산에 대하여 동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조광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업권자인 원고가 아니라 조광권자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내지 비과세관행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3호에 따른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연간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반비용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7

르면 이 사건 광산은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광구에 해당하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43조 제3호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3호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채광된 광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광업법에 따르면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하는 것인데(제3조 제3호), 여기서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제3조 제3호의3),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제3조 제4호).

이상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광산의 광물을 채광하는 자가 광업권자인 원고인지 아니면 원고가 이 사건 광산의 조광권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회사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조광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광산의 채굴과 채굴된 광물의 운송을 도급주면서 소외 회사와 채굴도급계약 및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과세대상 기간 중 생산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7

광물의 물량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채굴도급비(고령토의 경우 2013년 1,070원/톤, 2014년 1,185원/톤) 및 채굴운송비(고령토의 경우 670원/톤)로 지급한 점,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도급비는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의 시가표준액(고령토의 경우 2013년 7,700원, 2014년 7,800원)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금액인 점, 위 채굴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매월 광물의 채굴물량을 소외 회사에 통보하고 시료품위도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송석 지점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비록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상에는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에 지급하여야 할 조광료를 생산판매액의 5%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조광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채굴 및 운송 작업을 도급 받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한 물량에 비례하는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광산의 광물을 취득한 주체는 형식상 조광권자에 불과한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광산의 광물을 채광하는 자도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관행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7

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9년 소외 회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바 있고, 그 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광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여 징수된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관행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연간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광산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연간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반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지하자원의 과세표준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7

채광된 광물가액이고 채광된 광물을 운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광물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갑 제3호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연간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운반비용을 제외하여야 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매출액'이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광된 광물가액'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인 점(지방세법 제146조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규정인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그 규율대상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위 행정자치부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과세표준의 해석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해석을 위 연간매출액의 계산에 적용할 아무런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7

판사 김세욱

판사 현경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7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과세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5-17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 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 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